

2024타경34572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경매4계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이종돌 소유물건(2024타경34572)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사법보좌관 최재호

감정평가서번호: jj202409-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직지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 선 중

감정평가액	오천일백칠십삼만오천육백원정(₩51,735,600.-)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사법보좌관 최재호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종돌 (2024타경34572)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9.12	2024.09.09 ~ 2024.09.12	2024.09.13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8,442	토지	8,442	-	51,735,600
		이	하	여	백	
합계					₩51,735,6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준시점 : 2024-09-12)

I. 감정평가 개요

1. 대상물건 개요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소재 "중산저수지"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의뢰된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준시점 : 2024-09-12)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나.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4조에 의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대상물건은 시장성을 지니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그 밖의 사항

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을 통하여 이용상황 판단이 변경되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건 토지 현장조사시 분묘는 목측으로 발견되지 않았으나,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나,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상물건의 확정

[개별공시지가 : 2024]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1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131	2,423	전	보전관리지역	임야화 된 휴경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	7,750
2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230	664	전	보전관리지역	임야화 된 휴경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	7,460
3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61	5,355	임야	보전관리지역	자연림	맹지	부정형 완경사	1,310

※ 평가대상 토지의 형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참조.

6. 기준시점 등

가.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을 기준하여 2024년 09월 12일로 함.

나. 실지조사(2024년 09월 12일)을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거래가격수준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평가)에 의거 인근지역내의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부근지대상황 및 성숙도, 접근성,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제한상태, 일반수요와 유용성 등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4-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지리적위치	공시지가 (원/㎡)
A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291-4	4,782	전 과수원	보전관리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중산저수지 남측 원거리	8,340
B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31	39,626	임야 자연림	보전관리, 농림지역 세로(불)	부정형 급경사	고운마을 남측근거리	993

(2) 선정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대상 및 용도지역 및 지가변동내역

대상기간	대상지역 지가변동률(시점수정치)	용도지역 비고
2024-01-01 ~ 2024-09-12	충청북도 충주시	보전관리
2024.01.01 ~ 2024.07.31	0.861%	7월까지 누계
2024.07.01 ~ 2024.07.31	0.197% x 43/31	7 월 지가변동률 : 0.197%
누 계(2024.01.01 ~ 2024.09.12)	1.137% (≒ 1.01137)	(1 + 0.00861) * (1 + 0.00197 * 43/31)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라. 지역요인 비교

-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부항목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출하집적지와와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
자연 조건	기상조건 지세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일조, 습도, 온도, 통풍, 강우량 등 경사의 방향 경사도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임야지대

조건	항목	세부항목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인근시장과의 접근성	-
자연 조건	기상조건 지세 등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기온, 강우량, 안개, 적설량 등 표고 경사도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의 양부	-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행정상의 조장도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기호	표준지기호	지역요인	비고
1	A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2	A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3	B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항목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부항목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
자연 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부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 개별요인 비교항목 (임야지대)

조건	항목	세부항목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
자연 조건	일조 등 지세, 방위 등 토양, 토질	일조, 통풍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의 양부	-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개별요인 비교치

기호	표준지 기호	접근	자연	획지	행정	기타	소계	비고
1	A	0.80	1.00	0.75	1.00	1.00	0.60	본건 토지가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함.
2	A	0.75	1.00	0.80	1.00	1.00	0.60	본건 토지가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함.
3	B	0.90	1.10	-	1.14	1.00	1.129	본건 토지가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하나, 자연조건(경사 등) 및 행정적조건(표준지 일부면적 농림지역 등)에서 우세하여, 전체적으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5.2.5],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판례 등에서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가)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평가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선1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	4,782	전	보전관리지역 과수원	담보 2022-04-21	15,000	-
선2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산*-*	12,198	임야	보전관리지역 자연림	법원경매 2023-04-26	6,100	-

(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거1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	3,858	전	보전관리지역 휴경지	2022-07-06	8,553	-
거2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산*-*	1,653	임야	보전관리지역 자연림	2019-11-12	7,259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가) 산식

$$\text{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단가} = \frac{\text{사례가격}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시점수정한 비교표준지단가} = \text{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나) 비교사례의 선정

평가사례 중에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감정평가 목적 등에서 가장 유사성이 있는 <선1, 선2>를 비교 사례로 선택하였음.

(다)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단가

표준지 기호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A	선1	15,000	-	1.03280	1.00	1.000	15,492
B	선2	6,100	-	1.01801	1.00	0.616	3,825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사례 기호	기 간	대상지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시점수정치)
선1	2022-04-21 ~ 2024-09-12	충청북도 충주시 보전관리	1.03280
선2	2023-04-26 ~ 2024-09-12	충청북도 충주시 보전관리	1.018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지역요인

표준지 기호	사례기호	지역요인	비고
A	선1	1.00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B	선2	1.00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 개별요인

표준지 기호	사례 기호	접근	자연	획지	행정	기타	소계	요인설명
A	선1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사례와 표준지가 동일 토지임.
B	선2	0.70	1.00	-	0.88	1.00	0.616	표준지가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행정적조건(표준지 일부면적 농림지역 등)에서 열세함.

(라) 시점수정한 비교표준지단가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시점수정한 비교표준지단가 (원/㎡)
A	8,340	1.01137	8,435
B	993	1.01137	1,004

(마) 그 밖의 요인 격차율 산정

표준지 기호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단가 (원/㎡)	시점수정한 비교표준지단가 (원/㎡)	격차율
A	15,492	8,435	1.837
B	3,825	1,004	3.8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와 같이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단가와 시점수정한 비교표준지단가 간에 일정한 격차가 발생하며, 인근지역내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거래사례, 현지조사가격수준, 기타 참고자료를 분석하고 본건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 참작할 때 아래와 같이 보정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준지 기호	그밖의요인 보정치
A	1.84
B	3.81

사. 토지단가의 결정

기호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A	8,340	1.01137	1.00	0.600	1.84	9,312	9,300
2	A	8,340	1.01137	1.00	0.600	1.84	9,312	9,300
3	B	993	1.01137	1.00	1.129	3.81	4,320	4,300

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소재지	면적 (㎡)	적용단가 (원/㎡)	금액 (원)
1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131	2,423.00	9,300	22,533,900
2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230	664.00	9,300	6,175,200
3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61	5,355.00	4,300	23,026,500
	[합 계]			51,735,6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나.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1)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거1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	3,858	전	보전관리지역 휴경지	2022-07-06	8,553	-
거2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산*-*	1,653	임야	보전관리지역 자연림	2019-11-12	7,259	-

(2) 선정사유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위 거래사례를 비교 사례자료로 채택함.

다. 토지단가의 산정

기호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거1	8,553	1.00	1.02774	1.00	1.050	9,230	9,200
2	거1	8,553	1.00	1.02774	1.00	1.050	9,230	9,200
3	거2	7,259	1.00	1.08468	1.00	0.550	4,331	4,3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사정보정

기호	사례기호	사정보정	비고
1	거1	1.00	선정된 사례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
2	거1	1.00	선정된 사례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
3	거2	1.00	선정된 사례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사례기호	기간	대상지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시점수정치)
거1	2022-07-06 ~ 2024-09-12	충청북도 충주시 보전관리	1.02774
거2	2019-11-12 ~ 2024-09-12	충청북도 충주시 보전관리	1.08468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 지역요인

-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부항목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출하집적지와와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
자연 조건	기상조건 지세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일조, 습도, 온도, 통풍, 강우량 등 경사의 방향 경사도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임야지대

조건	항목	세부항목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인근시장과의 접근성	-
자연 조건	기상조건 지세 등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기온, 강우량, 안개, 적설량 등 표고 경사도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의 양부	-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행정상의 조장도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기호	사례기호	지역요인	비고
1	거1	1.00	본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2	거1	1.00	본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3	거2	1.00	본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㉔ 개별요인

- 개별요인 비교항목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부항목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
자연 조건	일조 등 토양, 토질 관개, 배부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경작의 편부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 개별요인 비교항목 (임야지대)

조건	항목	세부항목	비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
자연 조건	일조 등 지세, 방위 등 토양, 토질	일조, 통풍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의 양부	-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호	사례 기호	접근	자연	획지	행정	기타	소계	요인설명
1	거1	1.05	1.00	1.00	1.00	1.00	1.050	본건 토지가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함.
2	거1	1.00	1.00	1.05	1.00	1.00	1.050	본건 토지가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우세함.
3	거2	0.55	1.00	-	1.00	1.00	0.550	본건 토지가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소재지	면적 (㎡)	적용단가 (원/㎡)	금액 (원)
1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131	2,423.00	9,200	22,291,600
2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230	664.00	9,200	6,108,800
3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61	5,355.00	4,300	23,026,500
[합 계]				51,426,9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합리성 검토 및 토지감정평가액의 결정

가.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분	시산가액(원)	비고
공시지가기준법	51,735,600	-
거래사례비교법	51,426,900	-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제11조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을 검토하여 보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유사하게 산정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됨.

다. 토지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결정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인정되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구분	토지감정평가액(원)	비고
공시지가기준법	51,735,6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본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정에 적용할 가액으로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51,735,600	-
합 계	51,735,600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131	전	보전관리지역	2,423	2,423	9,300	22,533,900	
2	동 소	230	전	보전관리지역	664	664	9,300	6,175,200	
3	동 소	산61	임야	보전관리지역	5,355	5,355	4,300	23,026,500	
합 계								₩51,735,60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소재 "중산저수지"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은 어려우며, 인근에 포장도로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임.
- 일련번호 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화된 휴경지 상태임.
- 일련번호 3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지적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2 : 지적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3 :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젓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일련번호 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젓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젓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을 통하여 이용상황 판단이 변경되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토지 현장조사시 분묘는 목측으로 발견되지 않았으나,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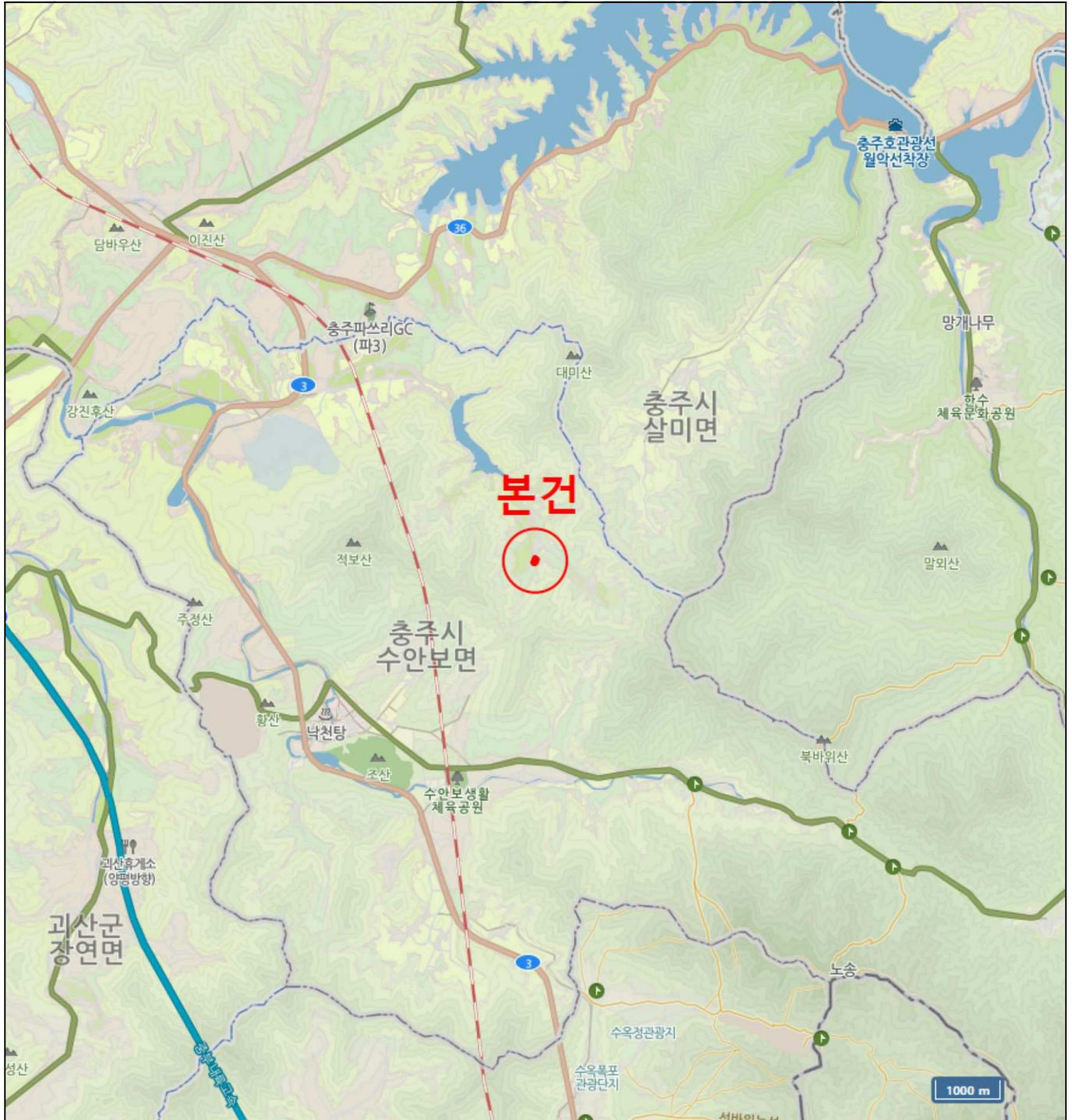
다.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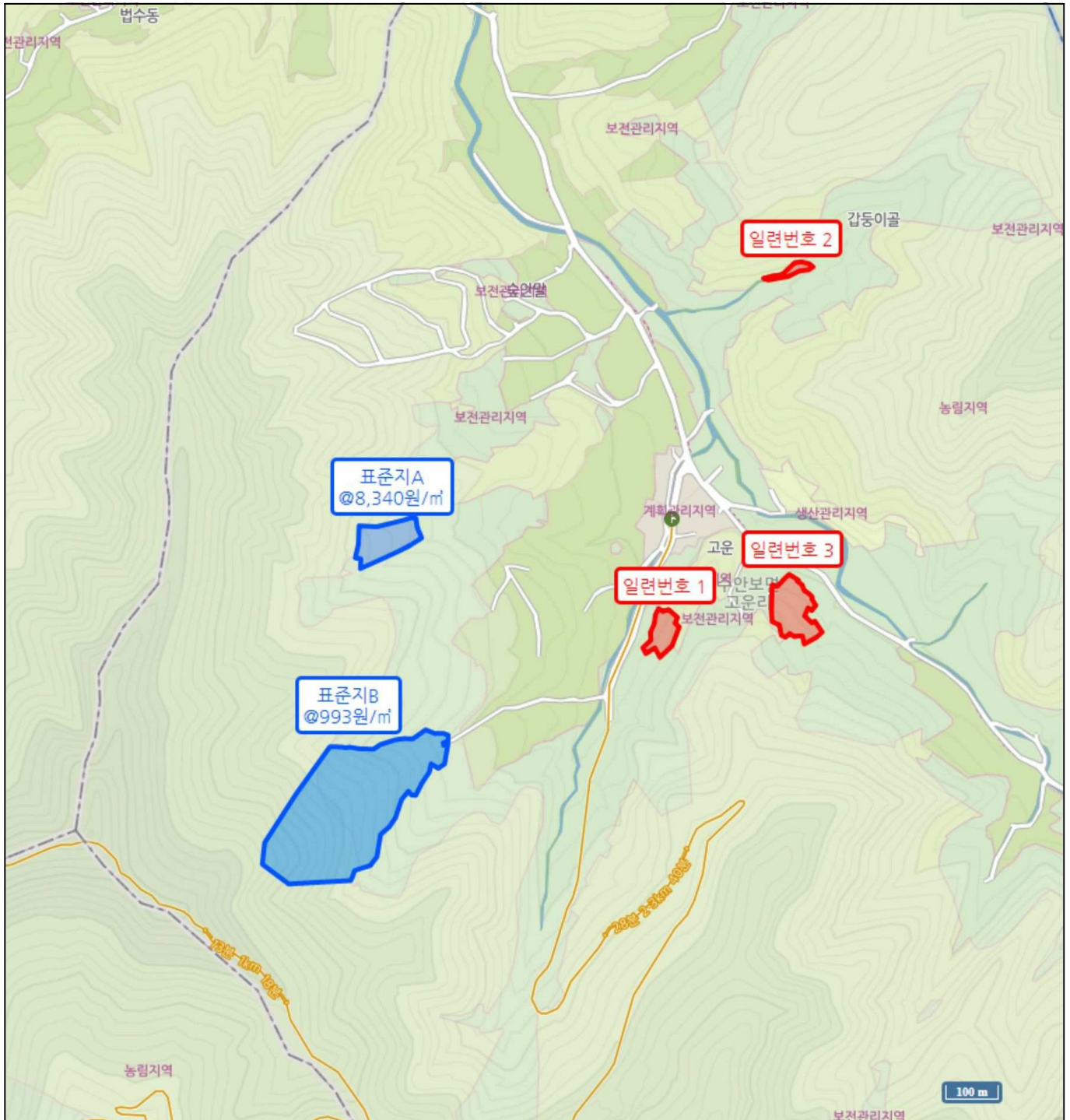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131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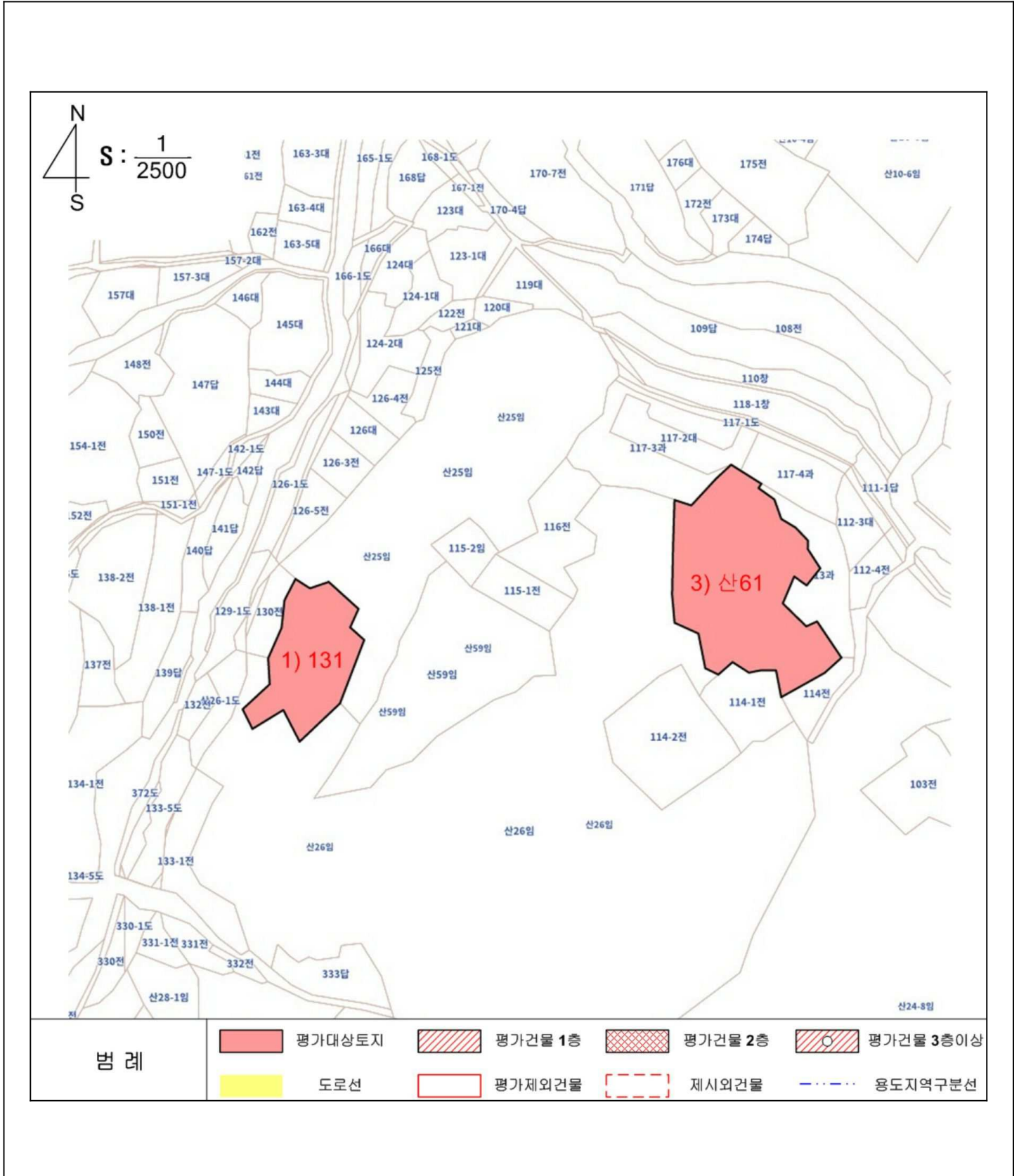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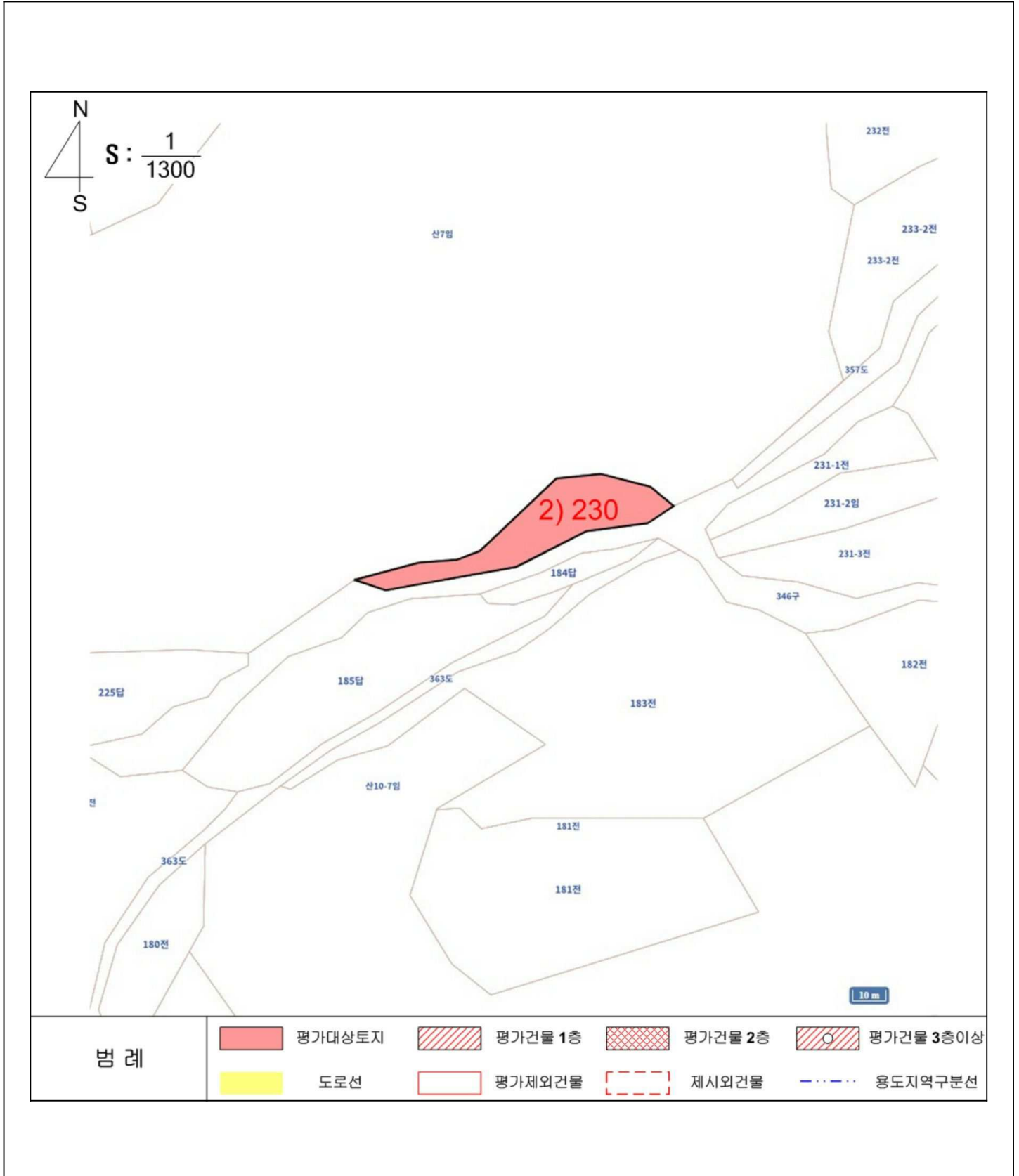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131외



지 적 도



지 적 도





1



1

사 진 용 지



일련번호 2 전경



일련번호 2 주위환경



3



3